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귀중

## 입찰신청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가 공급하는 입찰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신청자를 “갑” 이라하고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를 “을” 이라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용지매매계약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동 계약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현물확인)** 입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대상용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책임은 “갑” 에게 있다.

**제4조(입찰신청)** 입찰의 신청시 “갑” 은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을”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참가 신청서
2. 입찰신청 유의서 공람확인서
3. 시설설치 준수 약약서
4.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기 준수 약약서
5. 위임장 / 신분증
6. 재직증명서
7. 법인인감증명서
8. 법인등기부등본
9. 건축공사업자등록증
10. 신용평가서
11. 입찰보증금 무통장 입금증 사본
12. 입찰보증금 반환 의뢰서
13. 금융사 대출 약약서
14. 기업신용평가서
15. 참여약정서 및 사업계획서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모집 공고의 공급예정금액 10%로 한다.

② “갑” 이 입찰을 신청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을”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체결)** ① “갑”은 모집 공고에 별첨된 계약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내용 추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계약은 쌍방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대금지급)** ① 공급용지의 낙찰금액은 “을”의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갑”이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③ “갑”의 중도금 1차 납부가 7일이상 지연될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갑”이 낙찰대금 중 중도금2차 이후의 납부를 연체하는 때에는 당사가 지정한 연체금리(지연손해금율)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면적의 기준 및 정산)**① 목적용지의 면적이 가분할 면적일 경우에는 지적확정 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② 정산은 사업준공 후 “을”이 정하는 시기에 한다.

**제9조(소유권 이전등)** 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낙은 낙찰금이 완납된 후에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용지의 소유권이전은 당해 지구의 사업이 준공되고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신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입찰신청의 기한까지 소정 장소에 도달하지 아니한 신청
2. 입찰신청의 기한까지 제 5조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청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
4.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기타 제시된 조건에 위반된 경우

③ “갑”이 “을”이 지정한 일자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납입한 입찰보증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④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은 “을”에게 귀속된다.

1. 허위의 진술, 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시,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한 경우
2. 시설설치 준수 확인서를 위반하는 경우
3. 공급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을”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계약 후 중도금 1차을 7일이상 체납한 경우
5. 중도금 2차, 3차, 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기타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의무 불이행이 있거나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심히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매매대금의 30%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1. ④항 2호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2.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기 준수 확인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지식문화지원시설 Ⅱ-1, Ⅱ-2(업복1, 업복2)의 지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준공 후 5년간 제 3자 양도 제한(관광숙박시설 이외의 지정시설은 분양 가능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을”이 지정시설의 사용 전에 “갑”의 사전승인 없이 해당부지 등(사용부지 및 지하, 지상건축물 포함)에 대한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과 소유권, 기타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제11조(기반시설)** “갑”은 공급되는 용지에 대하여 개발사업 준공이전에 개발지역 내 기반 시설(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제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인바, 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급대상 토지의 사용이 사실상 제약받을 수도 있으니, “갑”은 입찰 전에 이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입찰신청유의서에 부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급 공고 내용과 기타 “을”의 공급 공고시 근거한 법규와 지침에 의한다.

# 시설설치준수 확약서

확약인 : \_\_\_\_\_

1. 상기 확약인인 당사는 귀사에서 공급하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식문화지원시설 II-1, II-2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약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은 귀사 귀속에 동의합니다.
3. 아래 사항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귀사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아 래 ◀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1부지에 객실 200실 이상을 보유한 4성급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단, 관광숙박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으로 한정 / 건축허가시 비즈니스센터, 레스토랑, 연회장(회의장), 휘트니스센터 반드시 설치)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2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 (비주거시설)(지상층 연면적 대비 5% 이상)를 설치하겠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확약인 : \_\_\_\_\_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귀중

※ 첨부 : 확약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시설설치준수 확약서

확약인 : \_\_\_\_\_

1. 상기 확약인인 당사는 귀사에서 공급하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식문화지원시설 IV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약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은 귀사 귀속에 동의합니다.
3. 아래 사항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귀사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IV부지에 의료시설(지상층 연면적 대비 10%이상)을 설치하겠습니다.

(단, 의료시설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의 제9호 의료시설 가목의 병원에 해당하는 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제외)

2018년 00월 00일

확약인 : \_\_\_\_\_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귀중

※ 첨부 : 확약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기 준수 협약서

협약인 : \_\_\_\_\_

1. 상기 협약인인 당사는 귀사에서 공급하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식문화지원시설 II-1, II-2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협약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귀사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아 래 ◀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1 부지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잔금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동시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시준공을 하겠습니다.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2 부지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잔금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동시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시준공을 하겠습니다.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2 부지의 건축물 착공은 지식문화지원시설 II-1 건축물 착공이후 또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I-1 부지와 동시착공 하겠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협약인 : \_\_\_\_\_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귀중

※ 첨부 : 협약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건축물 착공 및 준공 시기 준수 협약서

협약인 : \_\_\_\_\_

1. 상기 협약인인 당사는 귀사에서 공급하는 의왕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식문화지원시설 IV 부지에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아래 사항을 협약합니다.
2.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매매대금의 30%를 위약금으로 귀사에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 당사는 지식문화지원시설 IV 부지의 전체건축물에 대하여 잔금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동시착공 및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시준공을 하겠습니다.

2018년 00월 00일

협약인 : \_\_\_\_\_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귀중

※ 첨부 : 협약인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수령증

○ 입찰등록번호 :

○ 업체명 :

○ 보관명 :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용지 입찰보증금

○ 금액 :

상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정히 보관합니다.

2018년 월 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

※ 본 보관증은 입찰 완료후 제출하여야 환불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영수증

입찰보증금으로 보관하였던 금\_\_\_\_\_원(₩000,000,000,000)를 정히 영수합니다.

2018년 월 일

(영수인)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명날인)

# 입찰보증금 반환 의뢰서

1. 반환금명 : 의왕백운밸리 지식문화지원시설 입찰보증금
2. 신청인 :
3. 법인명 :
4. 청구권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5. 반환금액 :
6. 은행명 :
7. 계좌번호 :
8. 반환일자 : 2018.03.21  
낙찰일로부터 5일(은행영업일 기준)이내 반환예정  
※ 공휴일 제외

2018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귀중